

사234

## 공개 질의서

질의단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 협의회(공재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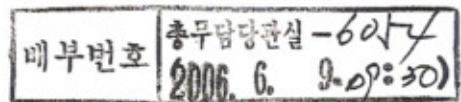
대표: 김명호, (010-5590-8913), 이춘길(011-380-4228), 윤병만

수신: 대법원장 이용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967(서초로 219), 137-750

참조: 국회 법사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제목: 대법원 판례 77 다 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과 그 위법 변경

이용훈 대법원장님



공재협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 모임입니다.

각 개인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부당 재임용 탈락 당한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공재협 교수들 복직에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은, 법원조직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들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공재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대법원장님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1. 대법원 판결 77 다 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 조 제 1 항의 3 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 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참조자료 1, 2, 3).
2.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http://glaw.scourt.go.kr/>)에는 77 다 300에 명시된 판시사항 2, 판결요지 2 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참조자료 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 조의 2 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 18 조,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 2 항

선 결	실 장	재판관	전결
접수번호	사법정책제4심판 - 1059 (2006. 06. 12. 1 :)		
공개구분	공개( )	담당자	이용훈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만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

대법원장님의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8

공재협 대표, 김명호

김명호  
Kim Myung-ho



## 참조자료

1.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2005. 10. 6)
2. “ 법원은 그간 위법적으로 은폐-방치해온 교수재임용 관련 첫 번째 판결인 ‘ 판례 77 다 300’ 을 소생시키고, 지난 20 년간 저질려온 잘못들의 시정에 즉각 나서라!!! ” , 민교협 등 7 개 단체 성명서(2006. 6. 7)
3. “ 사법부의 재임용법 부당해석과 사립대 교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5 개 단체 성명서(2006. 3. 8)
4.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crime.htm>

2005

##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열린우리당 최재전의원)

대상기관	대법원	일시	05년 10월 6일 10:00	번호	
주제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사건에 드러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 현 황

#### 1. 교원재임용 대표적 판결

가.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대한 최초 판결
-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은 당연히 예정된다는 취지임.
-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 등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의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

나. 1987. 6. 9. 선고 86다카2622판결

- 위 77다300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최초 판결
- 이후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계속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가능케 한 최초의 판결
- 서울 미대 김민수 전 교수는 이후 승소하여 6년 반만에 복직함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2. <4년제 대학>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2003년)

\* 이는 기간임용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해직교수 복직조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임.

갈리교 신학대	4	건국대	7	경남대	1
경산대	2	경성대	3	경일대	1
경주대	1	경희대	1	계명대	19
고려대	5	고신대	1	광주여대	9
군산대	2	그리스도신대	6	극동대	1
꽃동네사회복지대	1	나사렛대	2	단국대	14
대구효성카대	2	대신대	6	덕성여대	3
동국대	13	동덕여대	1	동명정보대	4
동아대	9	동의대	4	명지대	2
목원대	3	목포대	2	배제대	2
부경대	4	부산대	7	부산외대	1
상주대	1	상지대	9	서울대	1
서울산업대	2	서울신대	2	서울여대	3
서원대(?)	7	선문대(?)		성결대	16
성균관대	1	세종대	7	수원 가대	1
수원대	6	신라대	3	아세아연합신대	1



아주대	5	연세대	3	영남대	2
영남신대	1	위덕대	3	을지의대	1
이화여대	8	인제대	4	인천대	32
인하대	1	전주대	3	제주대	2
조선대	18	중부대	2	중앙대	3
청주대	2	충신대	2	충남대	4
충북대	2	칼빈대	1	평택대	1
포항공대	3	한경대	1	한국해양대	1
한남대	3	한동대	1	한밭대	1
한성대	2	한세대	4	한양대	1
협성대	1	호남대	4	홍익대	1
총 81 개 대학	327명	1990년도 이전 :	77명		
		1990년도 이후 :	250명		

[교육부가 설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재임용과 관련하여 본인과의 협의 하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경우는 재임용탈락보고에서 제외되므로, 현실적인 재임용배제 교수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3.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발표(2004년)

- 그동안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교원들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나 2004. 4. 22.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실질적인 심사로 전환
- 재심청구사건이 연평균 186건에서 228건으로 크게 증가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 14건(연평균) → 69건(2004년)  
사립학교교원 청구 : 49(연평균) → 102건(2004년)
- 사립학교 교원의 인용율이 55%에 달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인용율 21% 보다 두배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 사립학교 인사권 행사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발표.

#### ○ 문 제 점

##### 1.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변경

- 법원조작법 제7조 제1항에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위 86다카2622판결은 이전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하면서도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 변경을 하지 않았음.
- 대법관이 징계의 주체이므로 법관 징계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

## 2.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차별

-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공립학교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의무교육과 중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로 공교육기관과의 지위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헌법상 지위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할 것
- 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학문의 자유 보장 및 교육법정주의라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법적 취급이 법관, 국공립학교 교원, 다른 여타 직종의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차별받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
- 같은 사법상의 계약에 근거한 근로자의 취업계약의 경우 사립학교교원과 같은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상의 안정성은 특별히 취급받고 있는 등 계약관계 중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 대비됨.
- 대법원이 86다카2622판결을 내린 후 일부 사학재단들과 대학인사권자들은 20여년동안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판례를 빌어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자기 눈밖에 난 교수들을 해고시켜 왔음.
- 이후 국공립교원에 대한 행정 소송은 허용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여전히 거부하여 형평성의 문제 지적됨.



법원은 그간 위법적으로 은폐-방치해온 교수재임용 관련 첫 번째 판결인 '판례 77다300'을 소생시키고,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잘못들의 시정에 즉각 나서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많은 교수들이 아직도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7월 재임용탈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차도 부당 해직된 교수들에게 사실상 복직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원이 재임용탈락 문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는 부당해직 문제의 해결에 관건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법원 판결은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것이었다.

지난 3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 된 이후 최초로 사립대교수 재임용탈락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주심: 양승태 대법관, 2003 다 52647, 2003 재다 262)이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임용탈락 무효확인'이 곧 '교수지위 확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상식 밖의 기상천외한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재임용 심사 부당여부를 판단하여 심사가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재임용탈락 무효는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학교정관에 재임용 의무규정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교수지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임용탈락의 부당성이 밝혀져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를 무효화시키면 교수지위를 확인해줌으로써 당연히 복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와는 달리, 재임용 무효 확인은 해 줄 수 있지만 교수지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궤변인가?

이런 궤변을 담은 판결이 판례를 확정된다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과 신 사립학교법의 차이란 구법에서는 해당교수가 한 푼도 못 받고 해고되어야 한다면, 신법에서는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조교수의 경우 대체로 3년)에 해당하는 임금보상을 받고 해고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구제절차를 구비한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교수신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이 밝혀져도 임용권자는 약간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닐 뿐 자유재량으로 교수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당한 교수들이 학교로 되돌아가 다시 교단에 서

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구 사립학교법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오늘날에도, 다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과거사의 청산을 법원 개혁의 제1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신임 대법원장 하에서도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의 법원은 아예 '권력층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모양이다.

우리는 위의 판결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얻어낸 2003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현행 사립학교법 및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사실상 무용화-무효화시키는 판결이라고 믿는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를 되살린 것으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적 판결이다. 게다가 이 판결은,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지난 20년간 400여명에 달하는 해직교수들을 양산해낸 저 악명 높은 1987년 6월 9일의 판례 86다카2622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 된다"고 적시한, 1977년 9월의 재임용탈락 문제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판례 77다300의 해석과 전면 배치되는 법률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 86다카2622를 위시한 이후의 모든 판결은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 법원조직법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1의 3을 무시한 위법적 판결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전원합의체를 거침이 없이 위법적으로 법률해석을 변경했으므로 1977년 9월의 판례 77다300은 죽은 판례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판례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고의적으로 은폐-방치되어 왔을 뿐이며, 이런 고의적 은폐-방치에 기초해 법원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위헌적-위법적 판결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인권을 유린해온 그간의 잘못을 시정하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이 저질은 원죄를 씻어 내겠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재임용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간 법원이 고의적으로 은폐-방치해온 교수 재임용에 관한 첫 번째 판결인 판례 77다300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판례 86다카2622에 근거하여 지난 20년간 행한 판례들이 모두 위헌적-위법적 판결이므

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현재 계류 중인 사립대 재임용 사건들에 대해서도 판례 77다300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교수 재임용제도의 위헌적-위법적 판례 적용으로 인해 그간 억울하게 고통 받았던 해직 교수들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런 판례 적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조치를 행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지난 3월 8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사법부는 재임용법에 대한 부당해석과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에서 강조된 바 있다.

작년 10월 6일에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최재천 의원도 대법원이 더 이상 판례 77다300을 외면하지 말고 재임용관련 판결의 준거로 삼음으로써 사법부가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데에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주장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요구한다. 그간 은폐-방치해온 판례 77다300을 되살려라!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합당한 조치들의 시행에 즉각 착수하라!

아울러, 우리는 법원에 대해 우리의 경고를 전하려고 한다.

법원이 스스로 자기정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인내도 이제 한계 선상에 다다르고 있다. 법원이 그런 자기정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법원을 심판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6월 7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실현 공대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새사회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 사법부는 재임용법에 대한 부당해석과

###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사립대 재임용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내일(3월 9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전에 사법부가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해석상에서 잘못을 저질러 왔고, 사립대교수들에 대해 차별적 판결을 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 신임 대법원장 하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전의 사법부의 재임용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반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인 인혁당 판례에 뭇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재임용사건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77다300에서는 사립학교법 제 53조 2의 3의 취지를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된다.”(대법원 1977. 9. 28)고 해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987년 6월 9일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86다카2622를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기존의 법률해석을 변경하려면 전원재판부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법원은 위법적 판례인 86다카2622에 의거,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재임용 소송을 자동폐소 판결로 대응해 왔다. (게다가 대법원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77다300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취지관련 판시사항2, 판결요지2 및 참조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재임용 탈락교수들은 이후 재판권을 박탈당하고, 지난 20년간 학비리 등을 비판한 죄로 해직당한 근 400여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대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당했으며, (강의와 학문 연구를 게을리 하는 교수들을 도태시키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 대학 교육과 학문 연구의 수월성

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교수 기간임용제는 대학 내의 비리를 고발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몰아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는 법원이 오늘날의 교육황폐화 및 대학자정능력의 무력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부당 해직되었으나 법적인 구제수단조차 가지지 못했던 사립대 교수들의 줄기찬 헌법소원 끝에 마침내 전 아주대 윤병만 교수가 2003년 2월 27일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처음 세운 77다300판례를 무시하고, 판례86다카2622에 근거해 '반 교육적 판결을 반복해온 위법행위에 첫 제동을 건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서울대 김민수교수 사건 (2004. 4. 22. 선고 2000 두7735, 전원합의체)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라고 하더라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라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공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이전의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가 번복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은 김민수교수 사건에 대한 판결에 힘입어 국공립대 재임용 소송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김민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번복 취지 및 헌법의 교원 법정주의를 무시하고, 하급법원은 사립대 교수들의 재임용탈락 소송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계명대 사건(대구지법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성균관대 사건(서울중앙지법,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등에서 "재임용은 학교자유재량"이라는 위헌법률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학교의 자유재량을 무제한 인정함으로써 부당 해직된 교수들에게 변함없이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조차도 서울대 김민수교수 사건 계류 당시, 동일한 교수 재임용 사건인 사립대 교원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김민수 교수 사건과 차별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민수교수 사건 기간(2000년 9월 19일 접수, 2004년 4월 22일 선고) 동안 전 계명대 한철순교수 사건은 2001년 6월 18일 접수되어 3개월 만인 2001년 9월 19일에, 전 경문대 이용구 교수 사건은 2002년 2월 25일 접수되어 2개월 만인 2002년 4월 24일에 각각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김민수교수 사건 이후에도 법원의 사립대 교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의 부당한 차별이 사립대 교원 재임용 소송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이 주창하고 있다시피,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전에 저질러온 잘못을 반성하고,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법의 정의를 다시 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법원은 교수 재임용제도의 불법 판례 적용 행위에 대해 그간 억울하게 고통 받아온 해직교수들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그간 애써 무시해온, 교수 재임용에 관한 첫 번째 판결이자 재임용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었던 판례 77다300을 다시 소생시켜, 지난 20년 동안 판례 86다카2622에 근거하여 행한 모든 판례들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하며, 현재 계류 중인 사립대 재임용 사건들에 대해 판례 77다300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인권 신장에 기여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의 시급함을 인정하는 신임 대법원장 아래서 법원이 이제 자기정화 능력을 발휘해 그간의 잘못된 판결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법원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거듭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한다.

2006년 3월8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